<태안우체국 공고 제2021-5호>

태안우체국 상시계약집배원(농어촌소포배달원(공무직)) 채용 공고

태안우체국에서 소포배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시계약집배원(농어촌소포배달원(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8.

태안우체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 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담당업무
상시계약집배원 (농어촌소포 배달원(공무직))	1명	태안우체국 (소속관서 포함)	○ 소포우편물 배달·구분·상하차 보조·우편물 중간수도·방문접수(계약택배 제외)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공무직(비공무원)

※ 채용 후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나. 보 수 : 기본급 1,682,480원 + 수당

○ 기본연봉: 기본급, 운전수당, 상시집배특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보로금, 경영평가상여금

○ 기타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장려수당

○ 실적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 4대 보험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화~토요일 근무)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일	화	수	목	금	토
근로시간	08:00~17:00	08:00~17:00	08:00~17:00	08:00~17:00	08:00~17:00

라. 휴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마. 업무특성

ㅇ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일평균 100여건의 20kg상당(최고 30kg)의 다량 소포를 자동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8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 단, 관리 규정 제58조제3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나. 응시자격 제한

ㅇ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ㅇ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라.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ㅇ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다. 근무경력

- ㅇ 집배 업무 및 우체국택배원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ㅇ 집배보조업무 및 우편집중국 등 우편물구분보조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ㅇ 재택·통상·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농어촌소포배달원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가.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기준

심사항목 / 배점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충실성실성	정보화 자격증	무사고 경력	취업지원 대상자 등
100점	40점	20점	20점	10점	5점	5점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 체력 검정(2종목) :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검정기준표 : 붙임참조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ㅇ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원서교부 : 우정사업본부(충청지방우정청, 태안우체국) 홈페이지,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10. 21.(목) ~ 2021. 10. 25.(월) 3일간, 접수시간 09:00~18:00

다. 접수장소 : 태안우체국 3층 우편물류과(충남 태안군 태안읍 독샘로 5)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및 e-메일 접수

※ 토,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1.10.25.(월) 마감전 접수)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분까지 유효

※ e-메일 접수 주소: ciel519@korea.kr(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마. 접수 후 개인별 응시번호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 배부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모집공고 : 2021. 10. 18.(월) ~ 10. 25.(월)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1. 10. 21.(목) ~ 10. 25.(월)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0. 28.(목)

라. 실기 및 면접시험 : 2021. 11. 1.(월)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1. 5.(금)

바.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태안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마. 체력검정 응시 동의 서약서 1부

바.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서 1부

사.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면허발급 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야하며, 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아.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자.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ㅇ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차.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태안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ㅇ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태안우체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태안우체국 방문신청, 팩스(041-673-1700)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ㅇ 태안우체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공고일 이후 180일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라. 농어촌소포배달원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농어촌소포배달원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전형 일정을 진행하며 부족한 인원은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안우체국 우편물류과(041-674-0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류심사 배점기준(농어촌소포배달원)

<table>
<tr><th colspan="2">평정요소</th><th>배점</th><th>채 점 기 준</th><th>비고</th></tr>
<tr><td>기본 전형 요소</td><td>자격 요건 만족도</td><td>40</td><td>-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td><td>자격요건 미충족 시 서류전형 불합격이며 만족 시 기본점수 반영</td></tr>
<tr><td colspan="2">소 계</td><td>40</td><td></td><td></td></tr>
<tr><td rowspan="5">우대 요건</td><td>직무 관련 경력</td><td>20</td><td>
<table>
<tr><th>직무관련 경력 환산</th><th>환산경력 점수</th></tr>
<tr><td>· 집배 및 집배보조업무</td><td>· 3개월 이상 10점, 6개월 이상 20점</td></tr>
<tr><td>· 우체국택배원, 우편집중국 등 우편물구분 보조업무</td><td>· 3개월 이상 5점, 6개월 이상 10점, 1년 이상 20점</td></tr>
<tr><td>· 재택·통상·소포 위탁배달 경력 (민간택배 배달 경력 포함)</td><td>· 6개월 이상 5점, 1년 이상 10점 1년6개월 이상 15점, 2년 이상 20점</td></tr>
</table>
</td><td></td></tr>
<tr><td>정보화 자격증</td><td>20</td><td>- 정보처리기사 20점, 정보처리산업기사 15점, 정보처리기능사 10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15점
- 워드프로세서 : 1급 10점, 2급 8점, 3급 6점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15점, 2급 10점, 3급 8점
-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 10점, 2급 6점, 3급 4점
- 정보기술자격(ITQ): A 15점, B 10점, C 8점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10점</td><td>2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td></tr>
<tr><td>무사고 경력</td><td>5</td><td>- 무사고: 5점
- 사고 · 위반: 1건당 0.5점 감점</td><td></td></tr>
<tr><td>자기 소개서</td><td>10</td><td>- 충실성: 상 9~10점, 중 6~8점, 하 5점 이하</td><td></td></tr>
<tr><td>취업지원 대상자 등</td><td>5</td><t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점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5점</td><td>2개 이상 가점 항목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1개만 적용</td></tr>
<tr><td colspan="2">소 계</td><td>60</td><td></td><td></td></tr>
<tr><td colspan="2">합 계</td><td>100</td><td></td><td></td></tr>
</table>

【붙임 2】

실기시험 기준표

성별 / 종목		가	부
남자	윗몸일으키기 (기준시간: 1분)	18개 이상	17개 이하
	팔굽혀펴기 (기준시간: 1분)	13개 이상	12개 이하
여자	윗몸일으키기 (기준시간: 1분)	11개 이상	10개 이하
	팔굽혀펴기 (기준시간: 1분)	14개 이상	13개 이하

※ 팔굽혀 펴기: 남자와 여자의 측정방법이 상이 (실기시험 방법 참조)

실기시험 방법

종 목	측정방법
윗몸 일으키기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cm 간격으로 벌리고 무릎은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두 손은 머리 뒤로 깍지껴 잡는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복근력 만을 이용하여 몸을 위로 일으켜 굽힌다. -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으면 다시 누운 상태로 돌아간다. - 누운 자세에서는 깍지 낀 양손, 어깨 등이 반드시 매트와 접촉되어야만 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 부정확한 동작: 깍지를 풀거나,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 등의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함
팔굽혀 펴기	[남 자]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려 손바닥(또는 주먹)을 바닥에 대고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바닥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을 90도 이상 굽혀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 [여 자] - 시험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무릎과 손바닥(또는 주먹)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팔이 바닥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시험관의 "시작" 구령과 함께 팔을 90도 이상 굽혀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굽혔다가 다시 완전히 편 상태를 1회로 간주한다. - 1분 동안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만 기록한다.